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센터 간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8조(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센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만료일 또는 퇴소일 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수가 변동에 따라 재계약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쌍방 간의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무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월 한도액 초과시 장기요양급여 수가 또는 쌍방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 2026.01.01. 수가 기준

등급		수가 금액(원)	본인부담(원)	비고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1,280	6,273	○ 1일 식대 : 3,000원 - 1식 1,500*2=3,000원 ○ 1일 간식 : 500원 - 간식 500원*1회=500원
	장기요양 2등급	38,720	5,808	
	장기요양 3등급	35,740	5,361	
	장기요양 4등급	34,120	5,118	
	장기요양 5등급	32,490	4,874	
	인지지원등급	32,490	4,874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6,060	8,409	
	장기요양 2등급	51,930	7,790	
	장기요양 3등급	47,940	7,191	
	장기요양 4등급	46,300	6,945	
	장기요양 5등급	44,650	6,698	
	인지지원등급	44,650	6,698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9,730	10,460	
	장기요양 2등급	64,590	9,689	
	장기요양 3등급	59,640	8,946	
	장기요양 4등급	58,010	8,702	
	장기요양 5등급	56,360	8,454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76,820	11,523	
	장기요양 2등급	71,160	10,674	
	장기요양 3등급	65,750	9,863	
	장기요양 4등급	64,090	9,614	
	장기요양 5등급	62,460	9,369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82,730	12,356	
	장기요양 2등급	76,310	11,447	
	장기요양 3등급	70,500	10,575	
	장기요양 4등급	68,860	10,329	
	장기요양 5등급	67,240	10,086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	--------	--------	-------	--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 한도	보험료	85%	■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금여를 제외한 100% 중 85%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 건강보험공단 85% 부담 / 개인 15% 부담
		6~9%	■ 의료급여수급자 · 감경대상자의 경우 ■ 건강보험공단 94~91% 부담 / 개인 6~9% 부담
		0%	■ 기초 생활 수급자 ■ 건강보험공단 100% 부담 / 개인 면제

제10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및 보증인)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⑧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⑨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 ⑩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2.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및 보증인)

- ①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 청결 의무
- ③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4. 이용자 구비 서류

- ① 장기요양 인정서 1부
- ②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 ③ 복지 용구 급여 확인서 1부
- ④ 처방전과 복용 중인 약품

제11조(계약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초래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